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4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김경영, 김경우,
김소양, 김제리, 김혜련,
김화숙, 박기재, 이병도,
이정인, 전병주, 조상호,
최 선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지난해 10월 입양 뒤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사망한 16개월 아동의 사망사건을 포함하여 잇단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.
- 이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인력 및 통·반장에게 아동학대 인지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게 알리고 조사 및 사례관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내용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찾동 업무 수행인력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등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)
- 나. 통반장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, 찾동에 신고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의2제2항)

다.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시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아동학대대응 및 협조) ①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찾
동 업무 수행인력이 업무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
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
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이나 관계
기관에 알려야 한다.

② 제11조에 따른 통반장 등이 찾동 참여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
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찾동에 신고하고
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.

③ 찾동 업무 수행인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에
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학대에

방센터등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3조의2(아동학대대응 및 협조)</u></p> <p>① <u>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 업무 수행인력이 업무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이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1조에 따른 통반장 등이 아동 참여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동에 신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아동 업무 수행인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